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35호 2016. 3. 4 (금)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16-29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고성군 공고 제2016-206호 송학소하천 정비공사 편입토지 등 순실보상계획 공고 6
고성군 공고 제2016-216호 효대소하천 정비공사 편입토지 등 순실보상계획 공고 8
고성군 공고 제2016-223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고성군 공고 제2016-239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33

회									
람									

발행 : 고성군, 편집 : 행정과(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고시 제2016-29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26.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일	변경사유
(별지 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 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주택도시과 (☎055-670-2771)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 전 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고성읍 우산리 21	고성읍 우산4길 147	2016.2.2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고성읍 우산리)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2	회화면 삼덕리 179-4	회화면 삼덕5길 71	2016.2.2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회화면 삼덕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3	마암면 도전리 54-3	마암면 도전2길 54	2016.2.2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마암면 도전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4	하일면 학림리 1134-14	하일면 학림3길 7-77	2016.2.2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일면 학림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5	하이면 덕호리 511-5	하이면 하이로 268	2016.2.2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이면)을 이용하여 하이로로 명명	
6	회화면 삼덕리 535	회화면 삼덕4길 26-73	2016.2.2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회화면 삼덕리)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7	거류면 감서리 1122	거류면 감서6길 87-36	2016.2.2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거류면 감서리)을 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	
8	고성읍 교사리 848	고성읍 무량로 4	2016.2.26.	직권부여	2009 0805	무량산리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9	삼산면 삼봉리 산76-2, 산76-6, 산74, 789	삼산면 삼봉2길 51	2016.2.2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삼산면 삼봉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10	삼산면 판곡리 531-2	삼산면 판곡2길 118-80	2016.2.2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삼산면 판곡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11	개천면 가천리 969-7	개천면 가천1길 48	2016.2.2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개천면 가천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12	동해면 봉암리 산39-1	동해면 조선특구로 405-10	2016.2.2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동해면 조선특구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13	동해면 봉암리 산39-8	동해면 조선특구로 405-8	2016.2.26.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동해면 조선특구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도로명주소 변경

연번	도로명	도로명주소(기존)		도로명주소(변경)		변경 고시일	변경사유	비고
		도로명	건물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1	동해면	내산1길	40-15	내산1길	53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2	동해면	내산1길	40-35	내산1길	55-17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3	동해면	내산1길	40-43	내산1길	55-16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4	동해면	내산1길	40-53	내산1길	65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5	동해면	내산1길	40-73	내산1길	71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6	동해면	내산1길	40-83	내산1길	81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7	동해면	내산1길	40-93	내산1길	99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8	동해면	내산1길	48-19	내산1길	132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9	동해면	내산1길	48-20	내산1길	131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10	동해면	내산1길	48-26	내산1길	127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11	동해면	내산1길	41	내산1길	158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12	동해면	내산1길	43	내산1길	156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13	동해면	내산1길	47	내산2길	152	2016.2.26.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제2016-6호, 2016.1.11)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도로명	건물번호			
1	마암면	도전2길	54	2016.2.26.	건물 멸실	
2	동해면	내산1길	48-30	2016.2.26.	건물 멸실	

고성군 공고 제2016-206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송학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공사명	소재지	사업규모	편입지	사업시행자
송학소하천 정비공사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지내	○ 하천정비 L=750m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652외 7필지	고성군

2. 공고기간 : 2016. 2. 24. ~ 2016. 3. 9.(15일간)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16년 3월 예정

나. 대상물건 :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652번지 외 7필지

다. 보상방법 :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 2개이상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액을 개별 통지하여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 보상금전액 일시지급

4. 열람 및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고성군청 안전총괄과(055-670-2764)에 문의 바랍니다.

2016. 2. 24.

고 성 군 수

고성군 공고 제2016-216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효대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공사명	소재지	사업규모	편입지	사업시행자
효대소하천 정비공사	경남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지내	○ 하천정비 L=1.1km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81-2번지 외 68필지	고성군

2. 공고기간 : 2016. 2. 24. ~ 2016. 3. 9.(14일간)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16년 3월 예정

나. 대상물건 :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81-2번지 외 68필지

다. 보상방법 :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액을 개별 통지하여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 전등기와 동시 보상금전액 일시지급

4. 열람 및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고성군청 안전총괄과(055-670-2764)에 문의 바랍니다.

2016. 2. 24.

고 성 군 수

용 지 조 서 (총괄)

No.	주 소	지 번		지목			
		당초	편입		편입면적	성 명	비 고
1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81	181-2	대	12.0	곽**	
2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203-7	203-16	답	190.4	곽**	
3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203-6	2013-15	답	214.2	곽**	
4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203-8	203-17	답	222.0	곽**	
5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203-9	203-18	답	58.6	곽**	
6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203-10	203-19	답	90.3	김**	
7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4-2	194-15	전	257.0	효**	
8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0	190-1	대	5.0	김**	
9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1	191-1	대	9.0	곽**	
10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213	213-1	대	17.0	곽**	
11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09-2	509-16	전	55.0	강**	
12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10-2	510-17	장	4.0	강**	
13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10-15	510-20	전	169.0	강**	
14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09-8	509-17	대	22.0	정**	
15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09-12	509-18	전	1.0	최**	
16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09-12	509-19	전	12.0	최**	
17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10-6	510-18	전	296.0	곽**	
18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10-14	510-19	답	48.0	곽**	
19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704-1	704-7	답	326.0	곽**	
20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704-2	704-8	답	82.0	곽**	
21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83-1	483-3	전	33.0	이**	
22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82-1	482-3	답	410.0	곽**	
23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81-2	481-6	답	167.0	문**	
24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68	468-3	답	83.0	이**	
25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68-1	468-4	답	291.0	성**	
26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68-2	468-5	답	124.0	우**	
27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71-1	471-3	답	89.0	김**	
28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69	469-4	답	58.0	우**	
29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69-1	469-5	답	72.0	전**	
30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69-2	469-6	답	117.0	이**	
31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72-1	472-6	답	110.0	김**	
32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72-2	472-7	답	145.0	김**	
33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73	473-2	답	282.0	벽*****	
34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70-1	470-3	답	182.0	이**	
35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74-2	474-6	답	51.0	최**	

No.	주 소	지 번		지목			
		당초	편입		편입면적	성 명	비 고
36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82-2	582-9	답	76.0	유**	
37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82-1	582-8	답	130.0	김**	
38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84	584-12	답	138.0	최**	
39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83-2	583-8	답	63.0	최**	
40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84-1	584-13	답	109.0	이**	
41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84-2	584-14	답	76.0	이**	
42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84-3	584-15	답	100.0	이**	
43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85-1	585-9	답	12.0	이**	
44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85-5	585-10	답	38.0	이**	
45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93-7	593-14	답	111.0	김**	
46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93-6	593-13	답	84.0	김**	
47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93-5	593-12	답	49.0	김**	
48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8-4	198-4	도	10.0	현****	
49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8-5	198-5	도	13.0	현****	
50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8-3	198-3	도	73.0	현****	
51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6-2	196-2	도	26.0	곽**	
52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4-10	194-10	도	46.0	곽**	
53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4-5	194-5	도	10.0	곽**	
54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4-11	194-11	도	26.0	곽**	
55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4-12	194-12	도	36.0	이**	
56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4-3	194-3	대	64.0	김**	
57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4-7	194-7	도	13.0	곽**	
58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4-4	194-4	도	7.0	곽**	
59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4-6	194-6	도	20.0	곽**	
60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4-9	194-9	도	13.0	곽**	
61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4-8	194-8	대	50.0	효대**	
62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4-13	194-13	도	7.0	곽**	
63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05-22	505-22	답	6.3	우**	
64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05-19	505-19	답	119.5	우**	
65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85-2	485-2	도	198.0	우**	
66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85-4	485-4	전	262.0	우**	
67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85-5	485-5	전	118.0	우**	
68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482-2	482-2	도	116.0	곽**	
69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21-1	521-1	도	86.0	곽**	
합계					6,610.3		

고성군 공고 제2016-223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고 성 군 수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군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 제2장 감면, 제3장 보칙으로 구분 분류
- 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마.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 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아. 기업도시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차.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기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재무과(우편번호 52943)
(전화 055-670-2253, 팩스 055-670-225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5-670-225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입법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세 감면 조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성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 칙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 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 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등록 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 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 류			
「고성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미색모조 80 g / m ²)			

(뒤쪽)

작 성 방 법

1. []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6.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7.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8.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9.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신청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14. 관계증명서류: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고 성 군

수신자

제 목 :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는 「고성군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초 결정세액	감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결정 사유							

끝.

고 성 군 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관 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4.12.31., 2015.12.29.>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31.>

1. 대상 단체

-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 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 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 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 엽제전우회
-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 · 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2. 면제 내용

-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 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춘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 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9.>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31.>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4.12.31.>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삭제 <2014.12.31.>

3.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 12.27., 2014.1.1., 2014.12.23.>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삭제 <2014.1.1.>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 12.27.>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성군 공고 제2016-239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 건이 수리됨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4.

고 성 군 수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영업장 소재지	상 호	비 고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룡로 1557	삼산주유소	
경남 고성군 하일면 용태리 276	상호없음	

- 신청기간 : 2016. 3. 4. ~ 2016. 3. 11. 18:00까지
- 신청장소 : 고성군청 항공산업경제과(2층)
-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항공산업경제과에 서식 비치)
 - 사업자등록증(사실조사시 개점 상태가 되어야 함)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신분증, 도장
- 기타사항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되어,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으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 신청 시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항공산업경제과 (☎ 670-2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